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 | 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
자료문의 : 정대진 소프트웨어산업과장(2100-5121), 오정열 주무관(2110-4786)

새해부터 공공정보화시장 대기업 참여제한 대폭 강화

- 지경부,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하한금액(고시) 개정 고시 -

□ 새해부터 40억원 미만 공공정보화사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고, 대기업 중에서도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사업규모 80억원 이상인 사업에만 참여가 가능하게 됨

【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변경내용】

대상업체	사업금액의 하한	
	종 전	개 정
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	40억원 이상	80억원 이상
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	20억원 이상	40억원 이상

○ 아울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SI대기업들은, 기업집단 內 가장 매출액이 큰 사업자의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받게 됨

* 동 규정에 따라 80억원 이하 사업에는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 子會社 등도 참여가 배제됨

□ 지식경제부(장관 홍석우)는 지난 10월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「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」의 후속조치로 지식경제부 고시인 「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」을 개정하고 새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힘

* 이번 조치는 2011년 12월 29일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됨

□ 지식경제부는 금번 대기업 참여하한 금액 상향 조정을 통해 중소SW기업의 공공 정보화시장 점유율이 상당부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함

* 중소기업의 공공정보화시장 점유율 : ('10년 기준) 40.1% → ('12년 이후 예상)54.5%

붙임 : 「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」 개정 고시

붙임)

지식경제부고시 제2011- 호

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「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」(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-198호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11년 12월 30일

지식경제부장관

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

1. 대상업체의 사업금액의 하한

대상업체	사업금액의 하한
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	80억원 이상
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	40억원 이상

비고 1.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,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한다.

2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른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복수의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하여는, 그 중 매출액이 큰 사업자(소프트웨어사업이 전체 매출액의 30%미만인 사업자 제외)의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한다.

3. 사업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.

부 칙

1. 이 고시는 2012.1.1일부터 시행한다.

2.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 비고 2의 효력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